

1. 개정이유

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유족급여, 행방불명급여, 미지급 보험급여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원등의 재해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보험 급여 지급제한을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별지 제4호로 신설(안 제5조의8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8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와 같다.

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보험급여 제한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✓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4개월		
급여선택 [] 유족급여 [] 행방불명급여 [] 미지급 보험급여								
재해 어선원	성명			생년월일				
	재해연월일			사망연월일				
급여제한 심의 대상자	성명			생년월일				
	관계	사망자의 ()						
신 청 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				
	주소(우편물 수령지) ※ 도로명(새길)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
	연 락 처	휴대전화			자택전화			
		e-mail						
	관 계	사망자의 ()						
	유 족 ※ 유족대표자 포함	번호	관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		유족대표 여부	
		1			-		[]	
2				-		[]		
3				-		[]		
4				-		[]		
신 청 이 유	[작성 방식] 보험급여제한 심의대상자가 사망한 어선원등에 대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나 배경,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(시점포함)과 정도 등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별지 사용 가능)							
판 단 사 항	◆ 「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시행령」 [별표2]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1.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(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.)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,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.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.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대해 범죄행위,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 는지 여부 및 위반한 정도							
관 련 서 류	-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(예시) 각 1부. ① 주소를 같이 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: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등 ②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: 통장 사본 등 ③ 범죄행위,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사소송 판결문 등) ④ 기타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사망자의 유언, 형제자매의 확인서, 인우보증서 등)							

「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」 제31조의3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
 험급여 제한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날인)

수협중앙회장 귀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8(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조의8(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<u>보험급여 제한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와 같다.</u>